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2009.3.1. 개정
2008.3.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
3.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
4. 기타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9.3.1.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·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